

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 3. 10.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수정이유

조례 제명과 체계·문구 등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민 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함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조문을 기존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표현 통일(안 제11조).
- 나. 조례 제명, 조와 조의 제목 붙여쓰기 등 체계·자구를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민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(조례 제명,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)

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명 “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”을 “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시행령 제3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2조 본문 중 “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”위원회“라 한다)”로 하고, 안 제3조제2항 중 “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”도지사“로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
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의 조와 조의 제목은 붙여 쓴다.

수정안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</u> <u>설치·운영 조례안</u></p>	<p><u>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</u> <u>설치·운영조례안</u></p>
<p>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</p>
<p>제 2조 (기능)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1.~6. (생략)</p>	<p>제 2조(기능) ----- --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 1.~6.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 3조 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도지사라 한다)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</p>	<p>제 3조(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----- -----</p>
<p>제 11조 (수당 등)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 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※ 조와 조의 제목 붙여쓰기는 수정안대비표 작성을 생략하였음.
예시) 제1조 (목적) ⇒ 제1조(목적)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2.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
3.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
5.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6. 기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국토해양부, 충청북도 및 진천군·음성군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

2.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그 밖의 혁신도시 관련기관·경제단체 등에 속한 자

3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

4. 도시계획 및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(임기) 위촉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도지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(과)장이,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9조(서면심의) 도지사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·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

건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31조(혁신도시관리위원회)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2 이상의 시·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(이하 "공동혁신도시"라 한다)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2. 혁신도시의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
3.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
5.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6.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·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과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,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,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⑤ 위원장은 시·도지사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⑥ 그 밖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같은법 시행령

제32조(혁신도시관리위원회)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·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가 협의하여 정한다.